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4
----------	----

제출연월일:2003. 6.13
제출자:심재국의원외 6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03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 음

심 사 계 획

1. 활 동 목 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 사 안 건

1. 평창군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2.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3. 활 동 기 간

- 2003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이만재의원, 차재천의원, 고응중의원, 이수현의원, 신교선의의원, 심재국의원, 김영해의원

5. 운 영 계 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6.20(금)	제1차조례 (14: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 가입조례안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8.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